

## 3) 개정조문 및 해설

## ○ 주행세율의 인상조정 - 법제196조의17

지방세법 제196조의17을 개정하여 주행세율을 현행 3.2%에서 11.5%로 인상조정하였다. 주행세의 세율이 인상되더라도 그 인상된 만큼 교통세의 세율이 인하<sup>5)</sup>됨으로써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의 총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주행세율의 적용은 2001.1.1~2001.6.30까지는 현행과 같이 3.2%의 세율(세수 1,856억원)을 적용하게 되며, 2001.7.1~2001.12.31까지는 11.5%(세수 4,811억원)를 적용하게 되어 2001년 총 주행세수는 약 6,667억원으로 추계 된다. 주행세율 11.5%의 내용을 보면, 현행 주행세율 3.2%(1,326억원), 새차·헌차 차등과세에 따른 자동차세 수 감소액 3.9%(1,624억원, 연간 3,248억원), 운수업체 보조금 재원 4.4%(1,861억원)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보조금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 배분액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용 버스, 택시, 화물의 대수 등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일률적으로 4.4%의 세수가 배분되는 것은 아니고,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용 차량대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보조금액에 따라 배분되며, 주행세율이 7.1부터 인상되더라도 7월분 유류반출에 대한 주행세는 8월에 납세가 되므로 인상세율이 적용되어 실제 세입이 되는 것은 8월부터가 된다.

## &lt;법 제196조의17&gt;

- ① 走行稅의 稅率은 課稅物品에 대한 交通稅額의 1,000分の 115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稅率은 交通稅率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稅率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이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 및 제196조의17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교통세법시행령의 개정(2000.12.30, 대통령령 제17043호)으로 2001.7.1부터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율이 리터당 630원에서 588원으로 인하된다.